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906
----------	-------

발의연월일 : 2025. 9. 11.

발 의 자 : 이성윤 · 서삼석 · 장철민
문정복 · 이원택 · 손명수
박균택 · 윤준병 · 안호영
김기표 · 이건태 · 김승원
서영교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이를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기준인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과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은 1999년과 2006년에 각각 도입된 것으로, 기준 도입 이후의 재정 규모 확대 및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기준을 현실에 부합하게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 및 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기준 금액을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여 예비타당성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을 “다음”으로, “대규모사업”을 “대규모 신규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사업”을 “사업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사업”으로 한다.

1.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건설공사

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 건설공사

다.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건설공사

라.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건설공사

마.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건설공사

- 바.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 건설공사
 - 사.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 건설공사
 - 아.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에 한한다) 건설공사
 - 자. 그 밖에 도로·철도시설·도시철도시설·항만시설·공항시설·댐·수도·하천시설 및 각 시설의 관련 시설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에 대한 건설공사
2.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3.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
 - 나.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되거나 실시 중인 사업은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 재정부장관은 <u>총사업비가 500 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 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 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 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 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 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 으로 한다.</u> 1. <u>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u>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 ----- <u>다음</u> ----- ----- <u>대규모 신</u> <u>규사업</u> ----- ----- ----- ----- ----- ----- <u>. <단서 삭제></u> 1. <u>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 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 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서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건설공사</u>

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
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
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 건설공사

다. 「도시철도법」 제2조제3
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건설공사

라.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건설공사

마. 「공항시설법」 제2조제7
호에 따른 공항시설 건설
공사

바. 「댐건설·관리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 건설공사

사.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 건설공사

아.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같은 호 가
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시
설에 한한다) 건설공사

자. 그 밖에 도로·철도시설
· 도시철도시설·항만시설
· 공항시설·댐·수도·하
천시설 및 각 시설의 관련

	<u>시설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에 대한 건설공사</u>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	2.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3.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3.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 나.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4. ----- ----- ----- -----사업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사업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	----------------